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## 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1 년 2 월 24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노아파트너스주식회사  
(영문명) Noah partners Co., Ltd  
(홈페이지) <http://www.noaham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6, 102 동 1903 호  
(전 화) 070-7777-3225

대 표 이 사 : 손 종 현

담 당 책임자 : (직 책) 대표이사  
(성 명) 손 종 현 (전 화) 070-7777-3225

작 성 자 : (직 책) 대표이사  
(성 명) 손 종 현 (전 화) 070-7777-3225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-59 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, 동법 시행령 제 36 조제 2 항제 1 호바목, 같은 항 제 2 호다목, 같은 항 제 3 호다목 및 같은 항 제 4 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-59 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9 조제 1 항제 15 호에 의거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 11-11-1 호)

### 정기주주총회소집 결의

1. 일시	2021.03.12 (금) 10:00	
2. 장소	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6, 102 동 1903 호 당사 회의실	
3. 의안 주요내용	1. 제 2 기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2.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. 상호 변경 기존: 노아파트너스 주식회사 변경: 노아투자일임 주식회사 나. 사업년도 변경 기존: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 변경: 매년 4 월 1 일부터 3 월 31 일 다. 공고방법 변경 기존: 한국경제신문 변경: 홈페이지(www.noaham.com) 라. 사업목적 변경	
4. 이사회 결의일(결정일)	2021.02.23 (화) 10:00	
-사외이사	참석(명)	-
참석여부	불참(명)	-
-감사(감사위원) 참석여부		불참
5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없음

#### 【이사선임 세부내역】

성명	생년월일	임기	신규 선임여부	주요경력	현직	최종 학력	국적

#### 【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】

성명	생년월일	임기	신규 선임여부	주요경력	현직	최종 학력	국적

#### 【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】

성명	생년월일	임기	신규 선임여부	주요경력	현직	최종 학력	국적

**【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】**

구 분	내 용		이 유
1.사업목적 추가	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고유자산 투자 및 운용 자산관리 컨설팅업 국내외 기업의 경영진 재무 자문업		금융투자업자 등록에 따른 정관 반영
2.사업목적 삭제	기존의 사업목적 전부 삭제		
3.사업목적 변경	변경 전	변경 후	
	1) 기업 경영자문 및 재무 컨설팅 사업 2) 국내외 경제, 산업, 기업 및 자본시장 등의 조사분석에 관한 용역 제공 업무 3) 투자판단에 필요한 간행물 등의 발간 및 판매업무 4) 아이티 서비스업 5)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6) 각 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7) 각 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8)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	1) 투자일임업 2) 투자자문업 3) 고유자산 투자 및 운용 4) 자산관리 컨설팅업 5) 국내외 기업의 경영진 재무 자문업	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 1) 상법, 정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한 때 신고한다.
- 주 2) “의안 주요내용” 은 의안 안전별로 요약하여 주요내용을 기재하되, 사업목적변경, 이사.사외이사의 선임, 감사(감사위원회 위원포함)선임, 집중투표제 도입.폐지안건은 해당 세부내역서식에 따라 별도로 기재한다.
- 주 3) 임원선임의 경우 “의안 주요내용” 에 “상근이사 ○명, 비상근이사 ○명, 사외이사 ○명, 감사위원 ○명, 감사 ○명 선임” 등의 방식으로 임원 선임의 내용을 기재하고, 임원해임의 경우 “의안 주요내용” 에 해임임원별로 각각 해임사유,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- 주 4)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은 【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】 란에 기재한다.
- 주 5) “신규선임여부” 는 “신규선임” 또는 “재선임” 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
- 주 6) “주요경력”은 선임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주요경력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 7) “현직”은 신고일 현재 당해임원의 소속기관명 및 직책을 기재하되, 다른 상장법인의 임원(상근·비상근이사, 사외이사, 감사위원, 감사)인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함께 기재하며, 임원선임 이후 퇴임여부·시기 등을 함께 기재한다.
- 주 8) 【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】의 “사외이사 여부”는 “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” 또는 “사외이사인 감사위원”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 9) 【감사선임 세부내역】의 “상근여부”는 “상근” 또는 “비상근”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 10) 【집중투표제 도입·배제 세부내역】은 도입하는 경우 “변경 전”에 “배제”, “변경 후”에 “적용”을 기재하고, 폐지하는 경우 그 반대로 기재한다.
- 주 11) 상기 기재사항 외의 외부감사인 변경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 12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 중에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 대비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비중을 기재한다)